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5782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2. 31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양로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8조의2(양로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8조의2제1항 (양로지원)	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8조의2제1항 (양로지원)	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을 위해 수원 보훈원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, 이하 보훈공단)을 운영 중에 있으며, 보훈부는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정액(인건비·운영비 등으로 사용)으로 보훈공단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(예산 불필요)
- 또한 수원 보훈원은 총 수용인원이 215명(현재 100여명 입소 중, 공실률 53% 수준)으로 한정되어 있어, 향후 인원이 증가하여도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는 없음

III. 부대의견

- 해당 없음

IV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서기관	과장	실장·국장
장성훈	정우철	박경미	김법수 직무대리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우철	044-202-5631	matrixguy@korea.kr